

가상자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26. 5.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가상자산 기부 관리 규정」 및 「가상자산 기부 시행세칙」에 따라,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 수령·처분·운용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상자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라 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2. “실명계정”이라 함은 가상자산거래소 및 은행 등에 실제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말한다.
3. “가상자산 기부”라 함은 기부자가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가상자산 및 그 현금화 대금을 말한다.
4.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대학이 가상자산 기부의 접수, 보관, 처분(현금화) 및 회계·세무 처리 등에 관하여 마련하는 절차·기준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① 가상자산 기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에 가상자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 직속 기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상자산 기부 수령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위험 기부자 또는 고위험 거래로 평가된 가상자산 기부의 수령 여부 및 조건부 승인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 기부 관련 연례보고서(처분실적, 기부유형, 금액, 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 기부 관련 주요 부정·비리 의심 사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발전기금 소관부서 처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발전기금 소관부서 부서장
 2. 재무·회계 소관부서 부서장
 3. 감사 담당 부서장 또는 내부감사 책임자
 4. 정보기술(IT)·보안 또는 가상자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원 또는 직원
 5. 자금세탁방지, 금융법규, 세법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교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6. 그 밖에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총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요청이 있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중대하게 발생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5.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총장이 판단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장 회의 운영

제8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위원 3인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가상자산 기부 관련 긴급히 심의할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가상자산 기부의 장기 보유 등 주요 리스크가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대상 안건 상정) ① 가상자산 기부 제안이 접수된 경우, 발전기금 소관부서는 지체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기부자 정보 및 기부내역(자산명, 수량, 추정가치 등)
2. 가상자산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3. 기부 대상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 여부 및 3개 이상 국내 원화거래소 거래지원 여부
4. 수령계정 및 처분(현금화) 계획, 책임부서
5. 회계·세무처리 예정 방식
6.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요인 평가 및 대응계획
7.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상 사전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및 전자회의) 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에 의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심의의 경우에도 제9조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유지

제12조(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친족, 소속기관 등이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에 대하여 필요시 대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 기부에 대하여 기부 수령 거절, 조건부 승인, 추가 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간사, 관계자 등)는 직무상 알게 된 기부자 정보, 자금원천, 거래내역 등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위원 및 관계자가 퇴임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계속된다.

제6장 보칙

제14조(세부 시행)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상자산 기부 관리 규정」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가상자산 기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절차에 따라 심의·승인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되, 필요시 위원회가 재심의할 수 있다.